

재)그리스도의교육수녀원 정기 이사회기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5인	2인
재적임원	5인	2인
참석임원	5인	2인

1. 일 시 : 2024. 12. 16(월), 09:00~12:30 (소집통보일 : 2024년 12월 6일)

2. 장 소 : 경북 안동시 노하길 353-7 3층 회의실

3.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사장 윤말희, 이사 이말숙, 이사 문미라, 이사 송필교, 이사 황근속
감사 조정순, 감사 박희주
- 배 석 : 사무국장 박미경, 사무원 이정연

4. 심의안건 : 13건

- 제01호 의안 : 새숲지역아동센터 2024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제02호 의안 : 새숲지역아동센터 2025년 예산(안) 심의
- 제03호 의안 : 문경시다함께돌봄센터 2024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제04호 의안 : 문경시다함께돌봄센터 2025년 예산(안) 심의
- 제05호 의안 : 산북햇살나무지역아동센터 2025년 예산(안) 심의
- 제06호 의안 : 성심셀린의집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제07호 의안 : 성심셀린의집 2025년 예산(안) 심의
- 제08호 의안 : 성심셀린의집 운영규정 변경(안) 심의
- 제09호 의안 : 바를로교육센터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제10호 의안 : 바를로교육센터 2025년 예산(안) 심의
- 제11호 의안 : (재)그리스도의교육수녀원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제12호 의안 : (재)그리스도의교육수녀원 2025년 예산(안) 심의

5. 회의내용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이사장 윤말희 : 법인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이사 5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이사회 의 성원이 되었기에 재단법인 그리스도의교육수녀원 2024년도 정기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2) 이사장 인사

이사장 인사 후 주님의 기도를 바치다. 이번 이사회는 새숲지역아동센터 2024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새숲지역아동센터 2025년 예산(안), 문경시다함께돌봄센터 2024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 문경시다함께돌봄센터 2025년 예산(안), 산북햇살나무지역아동센터 2025년 예산(안), 성심셀린의집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성심셀린의집 2025년 예산(안), 성심셀린의집 운영규정 변경(안), 바를로교육센터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바를로교육센터 2025년 예산(안), (재)그리스도의교육수녀원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재)그리스도의교육수녀원 2025년 예산(안)등 총 12건이 상정되

어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 전차회의록 접수승인

○ 이사장 윤말희 : 전차회의록 승인 안건을 상정하고 사무국장 박미경에게 낭독케 하고 이의 여부를 물은 결과 이사 전원인 “이의 없습니다.” 라고 답하여 전차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 승인하기로 선포하다.

4) 부의 안건 상정

○ 이사장 윤말희 : 이번 이사회에 법인과 시설에서 부의안건 총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사님들께서 추가로 제출할 안건이 있습니까?
○ 이사 전원 : 없습니다.
○ 이사장 윤말희 : 추가로 제출할 안건이 없으면 법인과 시설에서 제출한 총12건을 심의 안건으로 심의할 것을 선포하다.

5) 부의 안건 심의

《제06호 의안 : 성심셀린의집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이사장 윤말희 : 성심셀린의집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상정하고 센터장 김혜정에게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

○ 센터장 김혜정 : 세입에서는 기초수급입소자가 예상보다 적게 입소하여 보조금 감액, 실비입소자 입소비용수입 증가로 입소비용수입 증액, 모금회 지원금 증가로 후원금 증액, 휴가지원비 지원 인력 감소로 전입금 감액, 보조금 반환금·불액액·이월금 증가로 이월금 증액, 잡수입 증액했다. 세출에서는 사무비와 인건비는 감액이고 운영비는 수용비 및 공공요금 증액으로 운영비 증액이다. 재산조성비는 생활실 환경개선 및 외곽 비가림 설치 등으로 시설비 증액, 사업비는 기초수급어린이 예상보다 적게 입소하여 운영비는 감액이고 프로그램 강사비와 홍보활동비가 높아져 사업비는 증액이고 예비비도 보조금 생계비 반환금 발생으로 증액이다.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함을 제안서에 의거 자세히 설명하다.

성심셀린의집 2024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규모	추경예산액	1,167,589,582원
	기정예산액	1,091,241,000원
	증감액	76,348,582원(증)

<세입예산 내역>

- ◆ 보조금 ▼7,952,000원(924,660,000원→916,708,000원)감액
- ◆ 입소비용수입 3,768,000원(75,482,000원→ 79,250,000원)증액
- ◆ 후원금 8,575,000원(46,725,000원→ 55,300,000원)증액
- ◆ 전입금 ▼200,000원(6,100,000원→ 5,900,000원)감액
- ◆ 이월금 70,981,000원(16,000,000원→ 86,981,582원)증액
- ◆ 잡수입 1,176,000원(22,274,000원→ 23,450,000원)증액

<세출예산 내역>

- ◆ 사무비
 - 인건비 ▼1,321,795원(75,299,000원→783,978,205원)감액

- 인건비 ▼1,321,795원(75,299,000원→783,978,205원)감액
- 운영비 12,065,000원(68,641,000원→ 80,706,000원)증액
- ◆ 재산조성비
 - 시설비 26,978,000원(41,205,000원→ 68,183,000원)증액
- ◆ 사업비
 - 운영비 ▼5,511,824원(161,416,000원→155,904,176원)감액
 - 사업비 1,800,000원(33,760,000원→ 35,560,000원)증액
 - 예비비 42,340,201원(0원→ 42,340,201원)증액

○ 이사 문미라 : 2024년 성심셀린의집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 이사 말숙 : 이사 문미라의 동의안에 재청하다.

○ 이사장 윤말희 : 이사 문미라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묻다.

○ 이사 전환 : 이사 전원 찬성하다.

○ 이사장 윤말희 : 당초예산액 1,091,241천원에서 76,356천원을 증액 조정하여 1,167,598,582원으로 편성한 성심셀린의집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07호 의안 : 성심셀린의집 2025년 예산(안) 심의》

○ 이사장 윤말희 : 성심셀린의집 2025년 예산(안)을 심의 상정하고 센터장 김혜정에게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

○ 센터장 김혜정 : 전년도와 비교하여 세입은 입소어르신(수급+실비)인원 변동이 발생하여 입소비용수입과 생계비 수입이 증가하고 경북과 구미시의 확정내시에 따라 인건비 3% 증액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조금 수입이 높아진다. 전년도는 모금회와 구미시청 등의 지원으로 지정후원금이 높았으나 2025년에는 지정후원금이 감소한다. 종사자 휴가지원비 증가로 전입금 증액, 반환금·이월금·불용액 제외로 이월금 감액, 식비단가 상승에 따른 종사자 식비 증가로 잡수입 증액이다. 세출은 인건비 증가, 공공요금 감액으로 인한 운영비 감액, 지정후원금사업 및 시설관리비가 줄어들어 시설비 감액, 사업비의 운영비 증액, 홍보활동 및 직원연수비 높아져서 사업비 증액, 반환금 미확정으로 예비비 감액이다. 2025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제안서에 의거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성심셀린의집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 규모	예산액	1,099,494,000원
	전년도 예산액	1,167,589,582원
	증감액	68,095,582원(감)

<세입예산 내역>

- ◆ 입소비용수입 1,624,000원(79,250,000원→ 80,874,000원)증액
- ◆ 보조금수입 34,262,000원(916,708,000원→950,970,000원)증액
- ◆ 후원금수입 ▼18,300,000원(55,300,000원→ 36,000,000원)감액
- ◆ 전입금 200,000원(5,900,000원→ 6,100,000원)증액
- ◆ 이월금 ▼86,981,000원(86,981,000원→ 0원)감액
- ◆ 잡수입 1,100,000원(23,450,000원→ 24,550,000원)증액

<세출예산 내역>

- ◆ 사무비

- 인건비 29,170,000원(783,976,000원→813,147,000원)증액
- 업무추진비 (920,000원→ 920,000원)
- 운영비 ▼10,386,000원(80,706,000원→ 70,320,000원)감액
- ◆ 재산조성비
 - 시설비 ▼57,106,000원(68,183,000원→ 11,077,000원)감액
- ◆ 사업비
 - 운영비 14,045,000원(155,905,000원→169,950,000원)증액
 - 사업비 ▼1,480,000원(35,560,000원→ 33,080,000원)감액
- ◆ 예비비및기타 ▼42,341,000원(42,341,000원→ 0원)감액

- 이사 이말숙 :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인데 양로원에는 지장이 없는지?
- 센터장 김혜정 : 정부 방향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재가복지를 많이 지원하고 있다. 수급자들은 재가복지 도움을 많이 받으나 일반 노인들은 재가복지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서 실비입소자들이 많다. 실비입소자인 경우 식사,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해서 오신다. 선산 뿐 아니라 상주, 김천 지역에서도 오신다. 외부지역 입소자가 46% 정도이다.
- 이사 황근숙 : 성심셀린의집 2025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접수할 것을 동의하다.
- 이사 송필교 : 이사 황근숙의 동의안에 재청하다.
- 이사장 윤말희 : 이사 황근숙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묻다.
- 이사 전원 : 이사 전원 찬성하다.
- 이사장 윤말희 : 세입·세출 1,099,494,000원으로 편성한 성심셀린의집 202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8호 의안 : 성심셀린의집 운영규정 변경(안) 심의》

- 이사장 윤말희 : 성심셀린의집 운영규정 변경(안)을 심의 상정하고 센터장 김혜정에게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
- 센터장 김혜정 :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육아지원)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이 규정에 적용받을 종사자는 없지만 상위법의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한다.

운영규정 변경(안) 신규대조표

성심셀린의집 운영규정 구조문 [5차 개정 및 시행 2023. 03. 09.]	성심셀린의집 운영규정 신조문 [6차 일부개정 및 제정 안 2024.12.16.]
○ 개정 및 신설의 이유 - 24년 9월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육아지원)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 있음. 시설 종사자의 특성상 모성보호 관련규정에 적용을 받게 되는 종사자는 많지 않으나 운영규정의 특성상 상위법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져 변경하고자 함.	
휴일 및 휴가 규정	
제21조(특별휴가) 2. 임신 중의 여직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허가하되 산후 45일 이상이	2.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직원의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줄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여자 직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6. 생후 6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의 경우 육아휴직을 얻을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유급)를 주어야 하며 임신부 보호 규정에 따른 범위와 절차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과 분할사용은 관련법을 따른다.

4. 여성생리휴가/보건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줄 수 있다.

(실행시 현행법에 따라 무급적용 예정)

6.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련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6-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관련법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7. 난임치료휴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이사 이말숙 : 상위법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므로 운영규정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하다.
- 이사 황근숙 : 이사 이말숙의 동의안에 재청하다.
- 이사장 윤말희 : 이사 이말숙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묻다.
- 이사 전원 : 이사 전원 찬성하다.
- 이사장 윤말희 : 성심셀린의집 운영규정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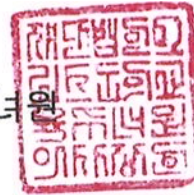
6. 폐회 선언

이사장이 오늘의 의안이 심의 종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참석임원 전원 날인할 것을 당부하며 12시 30분에 폐회 선언하다. (마침기도: 영광송)

위 기록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석임원이 기명날인 함.

2024년 12월 16일

재단법인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이 사 장 윤 말 희

(인)

이 사 이 말 숙

(인)

이 사 문 미 라

(인)

이 사 송 필 교

(인)

이 사 황 근 숙

(인)

감 사 조 정 순

(인)

감 사 박 희 주

(인)

